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학 교 급 식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법 률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,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학교급식법」이 개정(법률 제18639호, 2021. 12. 28. 공포, 2022. 6. 29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와 재난 발생 시 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(안 제2조의2, 안 제8조의2 제3항)

- 1)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를 50명 미만으로 조정하고,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를 현원 원아수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으로 함
- 2)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에 의해 급식관리를 지원받는 유치원은 「학교급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봄

나. 급식관리 지원범위 및 배치기준 설정(안 제8조의2 제4항)

- 1)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의 급식관리 지원범위는 영양관리, 식생활 지도, 영양상담, 위생 및 급식관리 업무와 유치원급식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
- 2)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은 유치원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

다. 재난 발생 시 학생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에 대한 범위 등 설정
(안 제10조제 3항 및 제4항)

- 1) 학생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 범위, 지원대상,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토록 함
- 2) 다만, 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 범위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식재료, 식재료 상품권 및 교환권, 그 밖에 학생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과 협의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중 “100명”을 “50명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의 제목 “(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)”을 “(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)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아 수가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배치된 영양교사에 의해 급식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.

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은 유치원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.

1. 영양관리
2. 식생활 지도
3. 영양상담
4. 위생 및 급식관리
5. 그 밖에 유치원급식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학생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 범위, 지원 대상,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 다만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제4항에 따른 식재료 등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
2.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
3. 그 밖에 학생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학교급식 대상) 법 제4조제1호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”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수(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<u>100명 미만인</u> 유치원을 말한다.	제2조의2(학교급식 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50명</u> -----.
제8조의2(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) ①·② (생략)	제8조의2(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아 수가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배치된 영양교사에 의해 급식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.
<신 설>	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범위는 다음

제10조(급식비 지원기준 등) ① ·
② (생 략)
<신 설>

<신 설>

각 호와 같으며,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은 유치원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.

1. 영양관리

2. 식생활 지도

3. 영양상담

4. 위생 및 급식관리

5. 그 밖에 유치원급식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급식비 지원기준 등) ① ·
②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학생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 범위, 지원대상,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 다만,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· 군수 ·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제4항에 따른 식재료 등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	<u>1.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</u> <u>2.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</u> <u>3. 그 밖에 학생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사항</u>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317